의료관광 대상 주요국가, 코로나-19에 대한 조치 현황

2020. 12. 18 (금) 기준

* 아래 조치 현황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코로나-19에 대한 각국의 대응 조치는 해당 출처 홈페이지,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
China

* 출처 :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자 : 86,789명 (사망 4,634명)	사망률 : 5.3%
대응조치	▶ 입국관련 조치(중국 내 공통사항) ○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(4.1.) ※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(정기편) ○ 12.1.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*에서 PCR 검사 및 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(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,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) ※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(부정기편) - 12.1.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*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필요(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) *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(kr.china-embassy.org/kor)에서 확인 가능하며,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확인 필요 ※ 건강 QR코드 발급 ○ 12.1(화) 이후 중국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웹사이트(https://hrhk.cs.mfa.gov.cn/H5/)에 업로드 해야 하며,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'녹색건강 QR 코드'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▶ 입국관련 조치(홍콩) ○ 홍콩 비거주자의 입국 금지(2020.3.25.~) ○ 중국,마카오, 대만에서 입경하는 경우 지난 14일 내 해외 어느 한곳이라도 간 경우 입국거부, 14일 격리 ○ 소지비자 유효기간 14일 미만자 입국거부 ○ 6.1부터 홍콩 국제공항의 경유 가능 ▶ 입국관련 조치(대만) ○ 3.19.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(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포함) ○ 대만공항 내 항공기 환승 금지(4.23~) ○ 대만 거류증, 외교공무증명서,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○ 3.21.(당일 포함) 이전에 무비자, 도착비자,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제4차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(총 120일 연장)자동 연장.(6월15일기준) ○ 대만은 8월1일부터 외국인 의료목적의 입국을 허용. (건강검진, 의료미용 제외)	* 출처 및 참고링크 1. 주중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upload/cntnts/cn-zh/visa_new.pdf 2. 각 지역 정부망 http://www.gov.cn/ 3. Bendibao(本地宝) http://heb.bendibao.com/news/202049/54293.shtm 4. 대만위생복지질병관리본부 https://www.cdc.gov.tw/ 5. 대만외교부 영사국 https://www.boca.gov.tw/mp-1.html
기 타	○ **(중국)** 중국 항공편 운항 코로나19 이전 대비 90%까지 회복 ○ **(대만)** 9.1(화)부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타액검사법으로 변경 ○ **(대만)** 12월부터 입국승객 및 환승객에 코로나19음성증명서 제출의무화 ○ **(중국)** 한국현지시간 2020년 12월 1일 0시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은 탑승전 2일안에 코로나-19핵산 검사(PCR)와 혈청 IgM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며, 2가지 음성 증명서로 주한 중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 제출해 "HS" 또는 "HDS" 표식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신청한 뒤에 탑승이 가능할 것입니다.	

Japan

* 출처 :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및 각 지역 대한민국 총영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자 : 190,950명 (사망 2,661명)	사망률 : 1.4%
대응조치	▶ **사증발급 관련** ○ 한-일 무사증 제도 임시 중단 연장조치 (3.7~당분간) ○ (사증 제한) 사업상 인재, 유학, 가족체재 등 장기체류자에 대한 사증 발급(10.1)(단, △단수·복수 사증 효력 정지, △한국, 홍콩,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) ▶ **입국관련 조치** ○ 11.1부터 한국 등 9개국 대상 입국금지 해제 및 감염증위정보 단계 하향(3단계→2단계) 조정(10.30.) ○ 한국 소재 일본대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고, △입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, △민간의료보험 가입, △입국시「서약서」및「질문표」제출, △입국 후 14일간 자택 등 장소에서 대기 및 대중교통 이용 불가 ※ 기존의 △한국 출국 전 72시간 내 코로나19에 관한 **「검사증명」 및 △일본 입국시 공항에서의 코로나19 검사는** 원칙적으로 불필요 ※ 단, 비즈니스 트랙(사업상 목적으로 출입국하는 경우)에는 ○ 한국 출국 전 72시간 이내 취득한「검사증명」 및 「일본내 활동계획서」 제출 필요, △입국 후 14일 간 접촉확인 어플 및 지도어플 사용, △입국 후 14일 간 일본 내 기업·단체에 건강상태 보고 - 비즈니스 트랙 관련 필요 서류 및 상세 수속 등에 관해서는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주한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▶ **자가격리 조치** ○ 입국 전 스스로 자택 혹은 시설, 교통(자차, 렌트카 등) 확보 ○ 비용 모두 본인 부담 ○ 출국 전 : 비자 신청, 활동계획서 제출, 14일간의 건강 모니터링 및 PCR 조사 결과 증명, 후생성 홈페이지에서 질문지 작성 후 제출 ○ 입국 전 : 공항에서 PCR 검사, 건강상태 등 질문표 제출, 활동계획서 제출, 접촉확인 어플 도입 ○ 입국 후 : 대중교통 사용 금지, 14일간 격리, 건강상태 확인, 위치정보 저장 ○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(일본인 포함)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이용 자제 요청	주한일본대사관 : 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0618379.pdf 위생노동성 : https://corona.go.jp/expert-meeting/pdf/sidai_r020618.pdf#search=%27%E6%B4%BB%E5%8B%95%E8%A8%88%E7%94%BB%E6%9B%B8+14%E6%97%A5%E9%96%93%E3%81%AE%E5%81%A5%E5%BA%B7%E3%83%A2%E3%83%8B%E3%82%BF%E3%83%AA%E3%83%B3%E3%82%B0%27
기 타	▶ **항공운항 관련** ○ (항공기 도착공항)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·간사이공항으로 한정	한-일 항공편 참고 : https://www.tokutenryoko.com/service/airticket/64 - ANA항공 : 1월말까지 비운항 - JAL항공 : 1월말까지 비운항

▮ CIS(러시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)

* 출처 :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주러시아 대한민국
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러 시 아) 확진자 : 2,736,727명 (사망 48,568명) ● 카자흐스탄) 확진자 : 189,551명 (사망 2,615명) ● 우즈베키스탄) 확진자 : 75,538명 (사망 612명)	사망률 1.8% 사망률 1.4% 사망률 0.8%
대응조치	▶ 러시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9.27.부터 한국(인천)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한-러간 직항 항공편에 대해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(제3국 경유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) ※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영문 또는 노어) 제출 필요 ※ 학생비자 및 노동·상용비자(HQS 포함)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※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▶ 카자흐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1회 입국시 최장 30일 무비자 입국 허용(6.29.) ※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, 환승 제한 규정 폐지(9.18.) ○ 10.6.부터 출발 국가를 불문하고,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소지 외국인의 입국 불허 -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영주권자 음성확인서 미소지시,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위해 7일간 시설 격리 (11.1 시행) -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 (1.27 시행) ○ 한국인 1회 입국시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 - 체류허용 총 기간은 한-카 사증면제 협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180일 중 6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. ○ 7.3부터 중단된 비자발급 업무 재개 (C-3-1, C-3-4, C-3-9 제외) ※ 종합검진 목적 의료관광 비자(C-3-3) 발급 임시중단 ○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, 환승 제한 규정 폐지(9.18) ▶ 우즈베키스탄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항공편 방역등급상 황색 국가(한국 포함)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△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(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, 영어 또는 노어본) 제출 또는 입국심사장에서 신속진단키트 검사(비용 자부담), △격리동의서(거주등록지 주소지 혹은 격리시설 지정호텔 등에서 2주간 격리) 제출 후 2주간 자가격리 시행(12.1.)) ▶ 사증발급 관련 ○ **카자흐스탄** -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6.29(월) 일반여권 소지 우리 국민의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 - 7.28부터 비자신청 업무 재개 (결혼이민(F6), **의료관광(C-3-3))** (단, 중증 외국인환자로 의료진 판단에 따른 진료 연속성,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) ○ **우즈베키스탄** -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해서 유효한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, 단기 방문해야하는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을 통해 개별 허가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.	* 출처 및 참고링크 1. 주알마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kz-almaty-ko/brd/m_8315/view.do?seq=1337578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 2.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://overseas.mofa.go.kr/uz-ko/brd/m_8555/view.do?seq=1346899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기 타	▶ 항공 운항 관련 등 (러시아) - 대한항공 : 인천-모스크바 주1회(금) 운항 ▶ 항공 운항 관련 등 (카자흐스탄) - 에어 아스타나 항공 : 7.1부터 월요일 금요일 - 아시아나 항공 : ~2021.01.31 주 1회 운항 ▶ 항공 운항 관련 등 (우즈베키스탄) - 아시아나 항공 : ~ 2021.01.31 주 1회 (월) 운항 - 대 한 항 공 : 12.1~12.31 비운항 ▶ 특이사항 ○ **(카자흐스탄)** 북카자흐스탄 지역 코로나19 경보 황색으로 하향조정 ○ **(우즈베키스탄)** 자국민에게 터키 여행 자제권고 발령	

Vietnam

* 출처 :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환자 : 1,407명 (사망 35명)	사망률 : 2.5%
대응조치	▶ 사증발급 관련 ○ 3.22.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○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(2.29.기준) ▶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 중단(3.17.기준) ○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,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 ○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(한국의 경우 3.12.부터 이미 중단) ○ 특수 상황(전문가, 사업가, 고급기술인력)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○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▶ 입국거부 예외 ○ 외교, 공무 목적 방문 ○ 주요 대외행사 참석의 경우(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) ○ 특수 상황(전문가, 사업가, 고급기술인력)에 따른 비자 발급 ○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,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 확인서 제출 ※ 모든 입국자 14일 시설격리, 베트남 도착 후 2차례 진단검사 실시	-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국적, 여권번호, 해당국가내 주소, 베트남내 체류주소, 검사기관명, 검사샘플 채취일, 검사일자, 검사방법, 검사 결과,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,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 (출처: 외교부 홈페이지)
기 타	▶ 항공운항 관련 대항항공 (KE679/680) : 인천-하노이 ~비운항 하노이-인천 ~ 주3회(월,수,토) 운항 아시아나(OZ733/734) : 인천-하노이 ~2021.01.31 비운항 하노이-인천 ~21.01.31 주 5회 운항 ▶ 특이사항 ○ 한국에 대한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 중	-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

Thailand

* 출처 : 주태국대한민국 대사관

구 분	내 용	비 고
코로나-19 현황	● 확진환자 : 4,297명 (사망 60명) ※ 태국 비상사태 재연장 (2021.1.15.까지)	사망률 : 1.4%
대응조치	▶ 사증발급 관련 ○ 한-태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(2020.4.13.부터) * 외교·공무여권 소지자 제외 ▶ 입국 및 자가격리 관련 조치 ○ 7.1.부터 제한적 입국 허용 ○ 입국 전 :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, 주재 발행 입국허가증 (COE), 비행적합 건강증명서,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(RT-PRCR 방식), 10만불 이상의 치료비 (코로나19 치료 포함) 보장 보험가입증명서,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, 출발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○ 입국 후 : 입국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, 필수작성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/어플리케이션 설치, 정부지정장소에서 최소 14일간 격리 및 관련 규정 준수, RT-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	외교부 : http://www.0404.go.kr/dev/notice_view.mofa?id=ATC000000007949&pagenum=1&st=title&stext= 태국 입국 가능 외국인 유형 : http://overseas.mofa.go.kr/th-ko/brd/m_3246/view.do?seq=1280397&srchFr=&srchTo=&srchWord=&srchTp=&multi_itm_seq=0&itm_seq_1=0&itm_seq_2=0&company_cd=&company_nm=&page=1
기 타	▶ 항공운항 관련 ○ 대한항공 (KE653) : 인천-방콕 ~ 화목토 운항 (KE654) : 방콕-인천 ~ 매일운항 (1/2(토) 비운항 아시아나항공 (OZ741) : 인천-방콕 ~21.01.31 주2회(화,금) 운항 (OZ742) : ~2021.01.31 주 2회 (수,토) 운항	